

2025년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용자 지원계획 공고

2025년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용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16.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□ 신청·접수기간: 2025. 1. 17.(금) ~ 2. 7.(금) (22일간)

- 접수장소: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
□ 지원근거

- 「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」

□ 용자추천 규모액: 335억 원 범위 내외

□ 지원대상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'농어업경영체법')」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(변경등록 포함)한 어업인
-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(법인)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.
- 2024. 1. 1. ~ 12. 31. 기간 중 갈치조업을 한 제주도 내 연·근해어선*의 소유자

* 연·근해어선 정의

- 「수산업법」 제40조제1항,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,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

※ 첨부서류

- 1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“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” 위판내역
- 2) 매매매 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, 갈치조업 증빙자료)

지원방법

- 자금별 용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차차액 보전

지원조건: 자금별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

- 운전자금: 2년 이내에 상환(연장불가)
 - 원금상환은 용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용자기간 내 분할상환

용자금리

(단위: %)

구분	협약금리	수요자금리	이차보전금리
보증서	4.8	0.7	4.1
부동산담보	5.0	0.7	4.3
신용	5.7	0.7	5.0

지원 제외 대상

- 2024년도 “근해자망” 및 “일본 EE Z입어협상 지연” 피해어선 특별용자 확정통지*를 받은 어선(어업허가 기준)

* 확정통지 척수: 219척(근해자망 85척, 일본 EE Z입어협상 지연 134척)

용자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

- 지원조건

구분	운전자금
정의	❖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, 인건비 등의 지급에 쓰는 자금
용자기간 및 상환	❖ 2년 이내(연장불가) ❖ 원금상환은 용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용자기간 내 분할상환
용자 실행기간	❖ 3개월 이내 * 기한 내 용자 미실행 시 용자지원 포기 간주

- 지원한도

(단위: 백만원)

톤급별	5톤미만	5톤 이상 ~ 10톤 미만	10톤 이상 ~ 20톤 미만	20톤 이상 ~ 30톤 미만	30톤 이상
용자금액	20	40	50	70	100

□ 용자금의 조기회수 등

- 가. 용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
 - 부정 사용 적발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용자지원 신청 불가
- 나. 용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- 다. 용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
- 라. 용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·도로 전출하였을 때

□ 협약금융기관 : 7개 금융기관*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

(* NH농협은행, 제주은행, 농협중앙회(지역 농·축협), 수협은행, 새마을금고중앙회, 신협중앙회, 산림조합)

□ 신청 및 처리절차

○ 신청 및 처리절차

- 신청(읍면동) →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(읍면동) → 용자추천 요청(행정시) →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(도)

○ 신청서류 : 용자신청서(구비서류) 및 사업계획서

❖ 용자 신청시 갖춰야 하는 각종 구비 서류는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,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.(규칙 제5조 제2항)

-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등기부등본

□ 구비서류

구 분	구 비 서 류
개 인 신청시	① 용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접수장소 비치) ② 갈치 조업실적('24. 1. 1. ~ 12. 31.) 1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“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”위판내역 2) 매매매 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, 갈치조업 증빙자료) ③ 신분증(신청자 지참) :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④ 어업인의 경우 어선원부, 어업허가증 등 용자지원 기준(톤수)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⑤ 그 외 세부사업별 용자 신청 기준에 따른 필요서류 등
법 인 신청시	① 용자신청서(접수장소 비치) ② 사업계획서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용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) ③ 갈치 조업실적('24. 1. 1. ~ 12. 31.) 1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“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”위판내역 2) 매매매 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, 갈치조업 증빙자료) ④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농(어)업법인의 사업범위(부대사업) 외에 사업 등기여부 확인 *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(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은 지원 제외) ⑤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재무상태표)

□ 문 의 처

-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(소득지원부서)
- 제주시 해양수산과: ☎ 064) 728-3372
- 서귀포시 해양수산과: ☎ 064) 760-2752
-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: ☎ 064) 710-3243

서 식

- ▶ (서식 1) 용자신청서
- ▶ (서식 1-1) 사업계획서(법인 등)
- ▶ (서식 1-2) 사업계획서(개인용)

<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>

신청사업명		2025년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용자		
신청인	주 소			
	성 명		생년월일	
	연락처 (자 택) (휴대폰)		E-mail	@

20 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다 음

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
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

20 년 월 일

신청자(동의자) : (서명)

제주특별자치도 ○ ○ 시장 귀 하

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<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>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20 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, 소득증빙을 위한 각 항목 (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)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20 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유효 기간 내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, 동의 거부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.

<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>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도, 행정시, 읍면동, 협약 금융기관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), 소득 증빙을 위한 각 항목 등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·임·축·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, 동의 거부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.

(서식1-1) 사업계획서(법인 등 단체)

사 업 계 획 서

(법인 등 단체)

법인 등 단체현황

① 주 사업내용	② 등 록 일
③ 자 산 규 모	④ 참 여 어가수 명
⑤ 사 업 규 모	⑥ 연 소 득 액 백만원

사업계획

⑦ 사 업 명				
⑧ 규 모				
⑨ 총사업비	백만원(자기자본 ,진흥기금융자 ,기타차입금)			
⑩ 주사업내용				
⑪ 연간소득액 (조수익)	만원			
⑫ 소요자금 조달계획	소 요 자 금		조 달 계 획	
	소요처	금 액	자금구분	금 액
		백만원	자기자본	백만원
			진흥기금	
		차 입 금		
⑬ 기존 용자 받은 금액 *필수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 기 : • 상환액 : • 대출 금융기관 :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 액 : • 잔 액 : 	

①~⑥ 법인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법인의 현재 사업내용, 등록일, 참여농가수, 사업규모, 연소득액 등 기재

- 한 사업장에 대해 법인과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이 중복 신청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
⑦~⑬법인이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(증빙자료 첨부)

⑫ 용자총액 기재 * 용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
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

*** 빈칸 없이 기재**

(서식1-2) 사업계획서(개인용)

사업계획서(개인용)

영농어 현황

① 주 업 종	② 연소득(조수익)
⑤ 어업규모	백만원

사업계획

⑥ 사 업 명				
⑦ 규 모				
⑧ 총사업비	백만원(자기자본 , 진흥기금융자 , 기타차입금)			
⑨ 공사기간				
⑩ 주사업내용				
⑪ 연간소득액 (조수익)	백만원			
⑫ 소요자금 조달계획	소 요 자 금		조 달 계 획	
	소요처	금 액	자금구분	금 액
		백만원	자기자본	백만원
		백만원	진흥기금	백만원
		백만원	차 입 금	백만원
⑬ 기존 융자 받은 금액 *필수 확인	❖ 시 기: ❖ 상환액:	백만원 백만원	❖ 금액: ❖ 잔액:	백만원 백만원

- ①란은 밭작물, 채소류재배, 감귤 등 지원 기준적용을 위한 유형기재
- ②란은 지원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
- ③란은 논, 밭, 과수원, 하우스시설 및 임업시설 규모 등을 세분하여 기재(농업인 및 임업인)
- ④란은 소, 돼지, 등 축종별 기재(축산농가),
- ⑤란은 어장, 어선, 양식시설 등을 구분(어업인)
- ⑥란 이하는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, 별도계획서를 작성한 신청자는 별도 첨부
- ⑨공사기간(사업기간)
- ⑫란은 시설자금 융자지원시는 반드시 기재토록하고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융자 지원 추천(융자추천금액은 총사업비의 80% 이하)
- ⑬융자 총액 기재 *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

*** 빈칸 없이 기재**